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382호
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비전자적 입찰방식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,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(2→1회) 및 대체공휴일을 반영한 선정결과 공개 등 지침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불필요한 비전자적 입찰방식을 삭제함(안 제8조제2항, 제19조, 제27조)
- 나. 적격심사 서류를 입대의에서 서면으로도 제출토록 의결하여 입찰 공고에 명시하는 경우 서면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
- 다. 제출한 입찰서 등 제출서류 교환·변경 금지를 명확히 함(안 제8조제4항)
- 라. 이해관계인이 시스템으로 개찰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입찰서 등 제출 서류 변경이 불가하므로 입찰서 개찰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삭제함(안 제9조)
- 마.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므로 불필요한 대리인 입찰 및 기명날인을 삭제함(안 별표3 제5호, 제7호, 제8호, 별지 제1호)
- 바. 시스템 사용에 따라 입찰서 서식 미사용 및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의 무효를 삭제함(안 별표3 제12조, 별지 제1호)
- 사. 선정시, 낙찰자 결정시 공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입찰공고 내용을 선정시에만 공개하도록 단일화 함(안 제11조제1항)
- 아. 대체공휴일을 반영하여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 마감일이 운영되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, 제16조제3항, 제24조제3항)
- 자.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의 적용시점을 입찰공고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(안 제18조제1항, 제26조제1항)
- 차. 제출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, 산출내역서, 입찰보증금 증빙서류를 추가하고, 입찰서의 구비서류를 삭제함(안 제8조제1항, 제19조, 제27조,

별지 제1호 서식)

카. 입대의 의결을 거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결정할 수 있고, 입찰 공고에 명시하도록 함(안 제32조제2항)

타.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폐지함(안 별지 제1호, 별표5, 별표6)

파. 오기 수정, 하위번호 삭제, 용어의 정의 및 문구를 명확히 함(안 제24조 제1항제4호, 제25조, 제31조제4항, 별표2~별표6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 : (30103)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○ 전자우편 : seju6757@korea.kr

○ 전화번호 : 044-201-3372, 3368, 팩스 : 044-201-5684